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2월 26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[한은경 의원 발의]

1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과 범죄로부터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·청소년의 유족에게 장례비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
- 조례의 내용이 「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오산시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과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및 「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내용과 중복되어 조례 운영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폐지함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1년 3월 4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 례 명 :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
폐지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

(한은경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제8-454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2월 25일
 발의의원 : 한은경 의원
 찬성의원 : 김명철, 이상복, 성길용,
 이성혁 의원

□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과 범죄로부터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·청소년의 유족에게 장례비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
- 조례의 내용이 「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오산시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과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및 「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내용과 중복되어 조례 운영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폐지함.

□ 참고사항

- 조례 운영 관련자료 : 별첨1
- 현행조례 : 별첨2
 - 「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」
- 관계법령 등 발췌서 : 별첨3
 -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조, 제5조, 제7조제1항, 제16조, 제17조
 - 「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조, 제2조, 제7조제1항
 - 「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조, 제3조, 제4조제1항

오산시 조례 제 호

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

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1】

조례 운영 관련 자료

1. 제9조 장례비 등 지원 (중복)

관련근거	관련법인	법인명	비 고
1. 범죄피해자보호법 2.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	범죄피해자지원법인	(사)수원지역범죄 피해자 지원센터	

※ 지원대상 : 오산시민

2. 아동·청소년 보호(범죄예방관련 활동) 단체

단체명	소 속 회원수	주요 활동사항	비 고
법 무 부 법 사 랑 위 원 오 산 지 구 협 의 회	59	○ 준법운동 및 청소년 선도 ○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	청소년 기본법 제29조
오 산 경 찰 서 초 등 학 교 학 부 모 플 리 스	265	○ 초등학교 교내외 캠페인 및 유해환경 순찰 활동	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
오 산 경 찰 서 중 학 교 학 부 모 플 리 스	113	○ 중학교 교내외 캠페인 및 유해환경 순찰 활동	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
오 산 시 청 소 년 지 도 위 원 협 의 회	37	○ 청소년보호 및 지도활동 ○ 청소년보호 캠페인	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42조
(사)아동·청소년 보호 협회 오 산 시 지 회	27	○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	
내 자 녀 안 심 하 고 학 교 보 내 기 협 의 회	16	○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○ 청소년 보호 캠페인	

3. 범죄예방관련 단체 (자치행정과 소속)

단체명	소 속 회원수	주요 활동사항	비 고
자 순 율 찰 방 연 범 합 대 대	170	○ 야간방법 순찰활동 ○ 청소년 선도활동	오산시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
민 간 기 동 순 찰 대 대	60	○ 야간방법 순찰활동 ○ 청소년 선도활동	
오 산 시 민 경 찰 대	30	○ 야간방법 순찰활동 ○ 질서확립 캠페인 전개	

4. 본 조례에 의거, 장례비등 지원사례 건수 : 없음

«자료제공 :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장(☎ 7891)»

【별첨2】

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

제정 2012년 2월 8일 조례 제1198호
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조례 제1381호
(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만 12세 이하로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”이란 만 18세 이하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
3. “범죄행위”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(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)를 말한다.
4. “범죄예방활동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.
5. “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”(이하 “자원봉사단체”라 한다)란 범죄행위로부터 시 관내 아동·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범죄예방활동단체의 요건)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예방활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.

1. 관할 거주지 내에 사무소(주민센터,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)를 두어야 한다.
2.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3.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.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시의 책무) 시는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, 자원봉사단체 육성·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.

제5조(범죄예방활동단체의 책무)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는 아동·청소년

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오산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「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」에 의한 오산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아동·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
2.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 예방대책 수립
3. 범죄예방활동 및 관련사업에 대한 실적평가
4.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,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
5.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장례비용과 위로금 지급에 관한사항
6.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

제8조(보조금 등 지원) ① 시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아동·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장례비 등 지원)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·청소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(이하 “장례비등”이라 한다)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.

제10조(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
2. 「국가배상법」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1조(수당 등)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오산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2. 11 조례 제138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① 부터 ⑰ 까지 생략

⑱ 「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「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⑲ 부터 ⑳ 까지 생략

[별첨2]

관계법령 등 발췌서

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(救助)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제7조(손실 복구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·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, 의료제공(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), 구조금 지급, 법률구조, 취업 관련 지원, 주거지원,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6조(구조금의 지급요건)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(이하 “구조피해자”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(이하 “구조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

1.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
2.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·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,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

제17조(구조금의 종류 등)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·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, 일시금으로 지급한다.

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.

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.

「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오산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범죄피해자”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삭제 <2020. 7. 10>
3. “범죄피해자 지원법인”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오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「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자원봉사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임무)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약지역 범죄예방·순찰 및 범죄 신고
2. 청소년 선도·보호 및 미아·기아·가출인 보호 및 인계
3.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
4.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
5. 학원폭력 예방 활동
6. 재해·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
7. 그 밖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

제4조(보조금 지원 등)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
2. 아동 대상 범죄예방 활동 사업
3. 청소년 탈선 예방 및 야간 범죄 예방 사업